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49

발의연월일: 2020. 7. 14.

발 의 자: 안병길・김도읍・추경호

정경희 · 정희용 · 조경태

권명호 • 이종성 • 이철규

구자근 • 윤상현 • 김형동

전봉민 • 박수영 • 정운천

송언석 의원(16인)

제안이유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는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 색과 항만시설의 보안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 음.

그런데 「항공보안법」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보안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보안장비의 국내 인증의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항만보안은 승객의 안전 및 국가보안상 중요한 사항으로 항만시설

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 등의 확보를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항만시설과 유사한 철도시설의 보안장비 설치에 관한 「철도안전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속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보안법」에 따른 장비운영자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현행법에 따른 항만시설 보 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 입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8까지, 제46조 및 제52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5항 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및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장비(이하 "보안검색장비"라 한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으로 한다.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가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 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0조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보안검색장비가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30조의5(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 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3에 따른 성능 인증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6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 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 험을 실시한 경우
- 5.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6.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8(수수료)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4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0조의5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

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30조의6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법률 제17021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0조의3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 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2.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항만시설 보안장비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 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 | | |
| 등의 보안검색) ⑤ 제1항에 따 | 등의 보안검색) ⑤ | | | |
| 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 | | | | |
|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및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장 | | | |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비(이하 "보안검색장비"라 한 | | | |
| | 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 | | | |
| | 한 사항 | | | |
| <u><신 설></u> | 제30조의3(보안검색장비 성능 인 | | | |
| | 증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가 | | | |
| |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 | | |
| |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 | | |
| | 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 | | | |
| | 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
| |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 | | |
| | 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ㆍ방 | | | |
| | 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 | | |
| |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 | | |
| | <u>다.</u> | | | |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 | | | |
| | 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 | | | |
| | 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 | | |
| |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 |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 | | |

<신 설>

<신 설>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 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렁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 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제30조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보안검색장비가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30조의5(인증업무의 위탁) 해양 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 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 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신 설>

<신 설>

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의3에 따른 성능 인증을 위하여 보안 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의 하여야한다.

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 조의6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 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 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

-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시험 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 • 방법 • 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
- 5.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6. 성능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 로 정한다.
- 제30조의8(수수료) 제30조의3제1 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신 설>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u>1</u>.·<u>2</u>. (생 략)

법률 제17021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제52조(과태료) <u><신 설></u>

| <u>성능</u> / | 시험을 | 받으 | .려는 | = 자 | 는 해 |
|-------------|------|--------|---------|--------|---------|
| 양수석 | 산부렁으 | 으로 | 정 | 하는 | 바에 |
| 따라 | 인증기 |]관 | 및 | 시험 | 기관에 |
| 수수화 | 로를 내 | 야 현 | }다. | | |

| 제46조(벌칙 | 적용에서 | 공무원 | 의 |
|---------|------|-----|---|
|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30조의5에 따라 보안검색
 장비 성능 인증 및 점검에 관
 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
 의 임직원
- 2. 제30조의6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에 관한 업무에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 3. · 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법률 제17021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제52조(과대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1. 제30조의3을 위반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 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2.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 ③ <u>제1항 또는 제2항에</u>-----

__